

Washington State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



모범적 물리력 사용 정책

2022년 7월 1일

정의.....	3
전반적 원칙.....	4
모든 물리력 사용에 적용되는 고려 사항.....	5
중대한 의사 결정	5
상황 완화	5
합당한 보호.....	6
물리력 사용이 필요하고 합법적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7
물리력 사용 전에 준수할 식별, 경고 및 기회.....	8
목조르기 및 목 제압 사용 금지	8
범법 행위 대응 조치.....	8
응급 처치	8
물리력의 유형.....	10
물리력 도구의 선택	11
올레로레진 캡시컴(OC) 스프레이.....	11
충격 무기	11
Projectile Impact Weapons(‘장거리 충격 무기’라고도 함).....	11
Electronic Control Weapons(‘전도 에너지 무기’라고도 함)	12
총기.....	13
제압 기구의 선택	14
스핏 가드	14
호블 리스트레인트	15
교육.....	15

목적: 본 정책은 가능하면 모든 사용 가능하고 적절한 상황 완화 기법을 사용하고, 물리력은 필요한 경우에만 적절하게 사용하며, 사용되는 물리력의 양이 해당 경찰관이 직면하는 위협 또는 저항, 그리고 수행하려는 법 집행 목표의 심각성에 따라 경찰관들에게 명확성을 제공하고 모두를 위한 안전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정의

- (1) **목조르기:** 다른 사람의 기도 제한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그 사람의 기도 또는 기관에 직접적인 압력을 가하는 행동. (Revised Code of Washington(RCW, 워싱턴 주 개정 법률) 10.116.020).
- (2) **압박 질식:** 흉부 및/또는 복부의 압박을 통해 폐의 확장을 기계적으로 제한해 호흡을 방해함으로써 부적절한 혈중 산소 수치 및/또는 혈중 이산화탄소 수치의 과도한 상승이 일어나 의식 불명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
- (3) **치명적 물리력:** 총기 또는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부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다른 수단을 통해 의도적으로 물리력을 가하는 것. (RCW 9A.16.010).
- (4) **상황 완화:** 사건 상황에서 물리력을 사용할 필요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도로 치안 경찰관이 사용하는 조치. (RCW 10.120.010 [2022 c 4 §2]).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은 상황 완화 전술이 아닙니다. 상황 완화 전술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상황 완화” 섹션에 나와 있습니다.
- (5) **타당:** 경찰관 또는 다른 사람이 해를 입을 위험을 높이지 않으면서 체포 또는 법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 차원에서 실시 또는 수행할 수 있는 경우.
- (6) **도주:** 자리를 벗어나 의도적으로 법 집행을 피하기 위해 달아나는 행동 또는 경우.
- (7) **심각한 신체적 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즉각적 위험:** 전체적 상황을 기준으로 특정 개인이 치안 경찰관 또는 다른 사람에게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 기회 및 의도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경우. (RCW 10.120.020 [2022 c 80 §3]).
- (8) **법 집행 기관:** 여기에는 RCW 10.93.020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라 모든 “종합적 권한 워싱턴 법 집행 기관” 및 모든 “제한적 권한 워싱턴 법 집행 기관”이 포함됩니다.
- (9) **덜 치명적인 대안:** 여기에는 예를 들어 구두 경고, 상황 완화 전술, 전도 에너지 무기, 올레오레진 캡시کم, 경찰봉 및 빈백탄(비살상용탄) 등이 포함됩니다. (RCW 10.120.010).
- (10) **필수:** 전체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물리력 또는 치명적 물리력 사용에 대한 합리적으로 효과적인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사용한 물리력 또는 치명적 물리력의 유형과 정도가 의도된 법적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경찰관 또는 그 외 사람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합당하고 적절한 대응인 경우. (RCW 10.120.010 [2022 c 80 §2]).
- (11) **목 제압:** 혈류를 조일 목적으로 목에 압력을 가하는 모든 혈관 압박 또는 그와 유사한 제압, 잡기 또는 그 외 전술. (RCW 10.116.020).
- (12) **치안 경찰관:** “종합 권한 워싱턴 주 치안 경찰관”, “제한적 권한 워싱턴 주 치안 경찰관” 및 “특수 임명된 워싱턴 주 치안 경찰관”을 모두 포함하며, 각 용어의 정의는 RCW 10.93.020을 따릅니다. “치안 경찰관”은 교도소, 교정 시설 또는 구치소에 소속된 교정 담당관 또는 그 외 직원은 포함하지 않으나 지역 사회 교정 담당관은 포함합니다. (RCW 10.120.010). 본 정책에서 치안 경찰관은 경찰관으로 칭합니다.
- (13) **물리력:** 합리적인 관점에서 신체적 고통 또는 부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행위 또는 사람의 움직임을 강요, 통제, 제한 또는 제압하기 위해 사람의 신체에 가하는 그 외 모든 행위. 물리력에는 몸수색, 의도치 않은 접촉, 구두 명령, 또는 신체적 고통이나 부상이 전혀 없는 순응적 수갑 채우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RCW 10.120.010).

- (14) **발사체 충격 무기:** 일시적으로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40mm 스펀지나 발포고무탄, 페퍼볼 (PepperBall) 또는 유사한 발사체, 블래스트볼 또는 빈백 등과 같은 발사체를 발사하는, 상대적으로 덜 치명적인 무기.
- (15) **자세 질식:** 사람이 기도를 압박하거나 자유롭게 호흡할 수 없는 신체 자세를 취하게 되어 부적절한 혈중 산소 수치 및/또는 과도한 혈중 이산화탄소 수치 증가가 의식 상실 또는 사망을 초래하는 경우.
- (16) **최루 가스:** 일시적인 신체적 불편감 또는 영구적 부상을 초래할 목적으로 공기중에 살포하는 클로로아세토페논(CN), O-클로로벤질리덴 말로노나이트릴(CS) 및 그와 유사한 화학적 자극 물질. “최루 가스”에는 올레오레진 캡시컴(OC)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RCW 10.116.030).
- (17) **전체적인 상황:** 물리력을 사용하는 시점과 그 시점에 이르기까지 알려진 모든 사실을 뜻하며, 여기에는 해당 경찰관이 그러한 물리력을 가하는 대상자의 행동과 해당 경찰관의 행동이 포함됩니다. (RCW 10.120.010).
- (18) **범법 행위:** 법에 반하거나 목격 경찰관 소속 기관의 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말하며, 단, 성격상 법적으로 무시할 만한 최소 기준 위반이거나 절차적인 문제인 경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RCW 10.93.190).

전반적 원칙

모든 인간 생명을 보존 및 보호하는 것은 법 집행 담당자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RCW 10.120.010). 경찰관은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존중 및 유지하고, 자신의 권한을 편견 없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물리력의 적절한 사용은 공정한 치안 유지를 보장하고 지역 사회에서 신뢰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경찰관들이 물리력 사용을 통해 강제 또는 통제하지 않는 경우 개인들이 법을 준수하지 않는 상황이 있으나, 경찰관들은 반드시 자신들의 권한이 지역 사회로부터 나오며, 합당한 수준을 벗어나는 물리력은 그러한 권한의 합법성을 저해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모든 물리력 사용에 적용되는 고려 사항

중대한 의사 결정

- (1) 중대한 의사 결정의 사용은 경찰관들이 본 정책에서 정하는 기대 사항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가능한 경우, 시민과 접촉하거나 접촉 여부를 고려할 때 경찰관은:
 - (a) 현장 도착 전에 확보 가능한 사실을 기초로 평가 및 계획 수립을 시작합니다.
 - (b) 필요에 따라 위기 개입 팀 또는 그 외 적절한 특수 팀 또는 전문가 등, 이용 가능한 리소스를 요청합니다.
 - (c) 현장에 도착하면 정보를 수집합니다.
 - (d) 상황, 위협 및 위험 요소를 평가합니다.
 - (e) 갈등 해소를 위한 옵션을 파악합니다.
 - (f) 합당한 조치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 (g) 진행되는 데 따라 상황을 검토 및 재평가합니다.

- (2) 본 정책에는 경찰관이 액티브 슈터(active shooter)와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신속하게 조치하는 것을 막는 조항은 없습니다. 안전하고 가능한 경우, 경찰관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불합리하게 위협에 처하게 만드는 전술적 결정을 통해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불필요하게 위협하게 해서는 안 되며, 그러한 전술적 결정에는 예를 들어 다음이 포함됩니다.
 - (a) 상황을 적절하게 평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즉각적으로 접근하는 것.
 - (b) 경찰관과 상대방 사이에 공간을 충분히 두지 않는 것.
 - (c) 상대방이 명령에 따라 만한 시간을 주지 않는 것. 그리고
 - (d) 상황을 불필요하게 악화시키는 것.

상황 완화

핵심 원칙: 상황 완화 의무

가능한 경우, 경찰관들은 물리력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 가능하고 적절한 모든 상황 완화 전술을 사용해야 합니다. (RCW 10.120.020 [2022 c 4 §3]).

- (1) 경찰관들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상황 완화 전술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전술이 있습니다.
 - (a) 상황을 재평가하고 사용할 전술을 결정하기 위해 상대방으로부터 뒷걸음질치는 것을 포함해 거리와 은신처의 이점을 유지하기 위해 전술적 위치 선정 및 위치 변경.
 - (b) 경찰관과 상대방 사이에 방패막이나 그 외 보호 장치를 두기 위해 장애물을 배치 또는 기존 구조물을 이용.
 - (c) 안전한 해결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추가적인 리소스의 고려 및 도착이 가능하도록 상황 진행 속도를 늦추거나 안정시키려는 시도
 - (d) 위기 개입 팀, 지정 위기 대응자, 기타 행동 건강 제공자, 또는 더 노련한 경찰관 또는 지휘관을 포함해 백업 경찰관들 등 이용 가능한 지원 및 리소스를 요청 및 이용.
 - (e) 명확한 지시 및 구두 설득 방법을 사용.
 - (f) 구두 및 비언어적 의사소통 기법으로 상대방을 진정시키는 것(예: 천천히 말하기, 조절시키는 어조 및 바디 랭귀지 사용하기, 팔짱을 푸는 것, 손짓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 밝은 섬광등 및 사이렌을 줄이는 것).
 - (g) 구두 지시가 부적절한 경우 비언어적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것(예: 상대방과 경찰관이 사용하는 언어가 다른 경우, 또는 상대방이 지시를 듣거나 이해할 수 없는 경우).

- (h) 사람들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심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예: 경찰관의 행동과 기대 사항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 상대방의 질문과 우려 사항을 경청하는 것, 존중하는 태도로 응답하는 것, 의사 결정할 때 독립적이고 공정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
- (i) 경찰관이 여러 명 있는 경우, 서로 상충되거나 혼란스러운 명령이 전달되지 않도록 경찰관 한 명을 지정해 의사소통하는 것. 또는
- (j)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고 상황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만큼 최대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이용 가능하고 적절한 전술을 사용하면서 인내심을 보이는 것.

타당한 배려

핵심 원칙: 타당한 배려를 실행할 의무

물리력 또는 치명적 물리력 사용 여부, 그리고 필요한 경우 법적 목적을 충족하는 데 있어 적절하고 가능한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을 결정할 때 어린이, 노인, 임신부, 제한된 영어 구사 능력을 가진 사람 및 정신적, 행동적, 신체적, 인지적 및 지각적 손상 또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특성과 상태를 고려하는 것. (RCW 10.120.020).

핵심 원칙: 지역 사회 돌봄 기능 수행

본 정책에는 경찰관이 지역 사회 돌봄이나 건강 및 안전 보호에 대한 요청에 대응하고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적절한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거나 제약하는 내용은 일체 없습니다. (RCW 10.120.020 [2022 c 4 §3]). 물리력 사용에 대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지역 사회 돌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도치 않은 접촉은 물리력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합당한 보호라는 것은 경찰관이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1) 가능한 경우 물리력을 사용하기 전에 이용 가능하고 적절한 상황 완화 전술을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RCW 10.120.010 [2022 c 4 §3]).
- (2) 물리력 또는 치명적 물리력을 사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의 특성 및 상태를 고려하고, 물리력이 필요한 경우 법적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적절하고 가능한 최소한의 물리력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한 특성 및 상태에는 예를 들어 상대방이 다음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a) 임신 사실이 육안으로 확인되거나 본인이 임신 상태임을 밝힙니다.
 - (b) 미성년자임이 알려져 있거나, 객관적으로 볼 때 미성년자로 보이거나, 본인이 미성년자라고 밝힙니다.
 - (c) 취약 성인임이 알려져 있거나, 객관적으로 볼 때 RCW 74.34.020의 정의에 따른 취약 성인으로 보입니다.
 - (d) 정신적, 행동, 지적, 개발 또는 신체적 손상 또는 장애의 징후를 보입니다.
 - (e) 일반적으로 알코올, 마약류, 환각제 또는 기타 약물의 사용과 연관되는 지각 또는 인지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 (f) 자살 충동을 겪고 있습니다.
 - (g) 영어 구사 숙달도가 제한적입니다. 또는
 - (h) 현장에 아이들이 함께 있습니다. (RCW 10.120.020).
- (3) 물리력의 필요성이 종료되는 즉시 물리력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RCW 10.120.020).

물리력 사용이 필요하고 합법적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핵심 원칙: 상황에 따라 합법적 법 집행을 안전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물리력만 사용합니다.
(RCW 10.120.020).

법 집행 대면 상황은 급속하게 바뀌고 부동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관들은 물리력 사용 필요성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자신의 전술적 위치 선정을 포함해 본인 조치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가늠해야 합니다.

- (1) 물리력이 필요한 상황이 되려면, 합당한 차원에서 효과적인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법적 목적을 충족하거나 해당 경찰관 또는 다른 사람들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리력 사용이 합당하고 적절한 대응이어야 합니다.
 - (a) 합당성은 위협의 즉각성, 물리력 사용 대상자의 행동, 해당 경찰관의 행동, 법 집행 목적의 심각성을 포함해, 물리력 사용 시점과 그 시점에 이를 때까지 해당 경찰관에게 알려진 전체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물리력이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는 해당 경찰관들이 본인들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불필요한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술적 결정을 내렸는지, 물리력을 사용하기 전에 가능한 경우 모든 이용 가능하고 적절한 상황 완화 전술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물리력을 사용할 때 합당한 보호를 실행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b) 비례의 원칙(과잉조치 금지의 원칙)은 물리력이 적용되는 시점에 해당 경찰관이 대면하는 위협 또는 저항의 즉각성 및 중대성, 그리고 달성해야 하는 법 집행 목표의 심각성에 물리력 사용이 상응하는가 여부를 바탕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위협 또는 저항은 상황이 진행되면서 바뀔 수 있습니다. 비례적 물리력이라고 해서 경찰관들이 반드시 상대방과 동일한 유형이나 양의 물리력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협이 더 임박했고 위협이 사망이나 심각한 신체적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을수록 비례적일 수 있는 물리력의 수준은 더 높아집니다.
- (2) **물리력의 사용은 합법적 목적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경찰관은 다음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대방에 대해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a) 해당 경찰관, 다른 사람, 또는 물리력이 사용되고 있는 대상자를 즉각적인 신체적 부상 위협으로부터 보호합니다(RCW 10.120.020).
 - (b) 상대방이 범법 행위를 저질렀거나, 저지르는 중이거나, 저지르려고 한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범죄 행위로부터 보호합니다(RCW 10.120.020 [2022 c 80 §3]).
 - (c) 체포를 수행합니다(RCW 10.120.020).
 - (d) 법에 따른 권한으로, 또는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사람을 구금합니다(RCW 10.120.020 [2022 c 80 §3]).
 - (e) 챗터 9A.76 RCW(RCW 10.120.020)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탈출을 막습니다.
 - (f) 자신이 구금되는 것이며 그 자리를 벗어날 자유가 없다는 고지를 받았다는 전제 하에, 합법적인 임시 수사 목적 구금으로부터 도망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능동적으로 도망하지 못하게 막습니다(RCW 10.120.020 [2022 c 80 §3]).
 - (g) 상대방을 구금 조치하거나, 평가 또는 치료를 위해 이송하거나, 챗터 10.77, 71.05 또는 71.34 RCW(RCW 10.120.020 [2022 c 4 §3])에 따라 기타 지원을 제공합니다.
 - (h) 법에 따른 권한으로, 또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성년자를 보호 구금 조치합니다(RCW 10.120.020 [2022 c 4 §3]).
 - (i) 경찰관이 특정 사람을 구금 조치할 권한을 부여하거나 지시하는 법원 명령을 실행 또는 집행합니다(RCW 10.120.020 [2022 c 4 §3]).
 - (j) 수색 영장을 집행합니다(RCW 10.120.020 [2022 c 4 §3]).
 - (k) 경찰관이 지시서 또는 명령을 실행 또는 집행하기 위해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을 법원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으로 법원 내에서 법관이 발급한 구두 지시서 또는 서면 명령서를 실행 또는 집행합니다(RCW 10.120.020 [2022 c 4 §3]). 또는

- (1) 그 외에 복지 점검 수행, 다른 응급 대응 팀 및 의료 전문가, 행동 건강 전문가, 복지 서비스 제공자, 지정 위기 대응 팀, 보호소 또는 거주지 제공자, 또는 그 외 다른 시민을 지원하는 등 다른 지역 사회 돌봄 기능을 수행합니다(RCW 10.120.020 [2022 c 4 §3]).

물리력 사용 전에 준수할 식별, 경고 및 기회

안전하고 가능한 경우, 물리력 사용 전에 경찰관은 다음 사항을 수행해야 합니다.

- (1) 자신이 경찰관임을 밝힙니다.
- (2) 상대방이 특수 요구, 정신 질환, 신체적 제약, 발달 장애, 언어 장벽, 또는 그 외에 경찰관의 명령을 이해하고 따르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을 갖고 있는지 판단하려고 시도합니다.
- (3) 지시 사항과 경고를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 (4) 상대방에게 저항을 멈추지 않을 경우 물리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 (5) 물리력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경고를 통해 상대방에게 명령에 따를 합당한 기회를 줍니다.

목조르기 및 목 제압 사용 금지

치안 경찰관은 치안 경찰관으로서의 임무 수행 과정에 다른 사람에 대해 목조르기 또는 목 제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RCW 10.116.020).¹

범법 행위 대응 조치

핵심 원칙: 개입 의무 및 범법 행위 보고 의무(RCW 10.93.190).

다른 경찰관이 타인을 상대로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하고 있거나 시도하는 모습을 목격한 근무 중 경찰관은 누구나 과도한 물리력의 사용 또는 사용 시도를 중지하거나 과도한 물리력의 추가적인 사용을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 개입해야 합니다. 다른 경찰관이 저지르는 범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다른 치안 경찰관이 저지른 범법 행위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가진 근무 중 경찰관은 누구나 그러한 행동 보고에 관한 목격 경찰관의 소속 기관 정책 및 절차에 의거해 목격 경찰관의 직속 상관 또는 다른 상급 경찰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Washington State Criminal Justice Training Commission(CJTC, 워싱턴 주 형사 사법 교육 위원회) 개입 의무 모범 정책'도 참고하십시오.)

응급 처치

핵심 원칙: 응급 처치를 제공 또는 용이하게 할 의무

모든 법 집행 담당자들은 법 집행 당국이 통제하는 현장에서 부상자에게 가장 이른 안전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 처치를 제공하거나 용이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RCW 36.28A.445). ('CJTC 응급 처치 지침'도 참조하십시오.)

- (1) 부상 당한 사람과 제압 당한 사람은 법 집행 당국의 보호관리 하에 있는 동안은 감시해야 합니다.
- (2) 경찰관들은 교육 받은 대로 자세 질식 및 압박 질식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¹ 2022년 7월 1일 현재, Attorney General's Office (법무장관실)는 입법부의 요청에 따라 이 주제에 관한 정식 의견서 초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RCW 10.116.020에서 목조르기 또는 목 제압을 구체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RCW 10.120.020 (3)이 실질적으로 법 집행 경찰관에게 "임박한 위험으로부터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그러한 전술을 사용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가 여부입니다. 의견서는 2022년 하반기에 작성 완료되면 온라인상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게시 장소:

<https://www.atg.wa.gov/ago-opinions/year/2022>

- (a) 지면 접촉 상태에서 수갑을 채우거나 다른 방법으로 제압한 후 안전하고 가능한 상황이 되는 즉시 상대방을 측면으로 굴린 다음, 의식 상실 상태인 경우를 제외하고, 정상적 호흡 기제를 방해하지 않는 곧은 자세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이 요건은 수갑을 찬 사람이 엎드린 자세인 경우 특히 중요합니다.
 - (i) 예외: 상대방이 의식이 없거나 자세를 바꿨으면 하는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 경찰관은 그렇게 할 경우 당사자, 경찰관들 또는 그 외 사람들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면 해당 자세로 바꿔주어야 합니다.
- (b) 앓기, 무릎 꿇기 또는 서기를 포함해, 흉부, 목 또는 등에 장시간 압박을 가하지 마십시오.
- (c) 사망은 갑자기 발생할 수 있고 단 몇 초 안에 가능한 소생 지점을 넘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제압된 동안은 그 사람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합니다. 감시에는 예를 들어 그 사람의 호흡, 안색의 적합성 및 본인이 말하는 기능 손상을 평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 (d) 인력 제약이 허용하는 경우 팀 제약 상황 중 가능하면 상급 경찰관이 “안전 경찰관”을 지정해야 합니다. 안전 경찰관은 다음 시점까지 해당 개인의 건강 및 복지 상태를 감시해야 합니다.
 - (i) 책임이 의료 전문가에게로 이관되는 시점(예: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EMT, 응급의료 기술자), 응급구조사). 또는
 - (ii) 해당 개인이 수송 차량 내에 앉은 자세를 취하고 안전 경찰관에게 자신의 상태가 양호하다고 구두로 표현하며, 안전 경찰관이 보기에 상태가 양호하고 말도 정상적으로 한다고 판단 되는 시점.
- (e) 안전 경찰관이 해당 개인의 호흡이나 안색에 문제가 있거나 기능 손상이 있음을 인지하는 경우 상급 경찰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 (f) 제압된 사람이 엎드린 자세인 상태로 수송하지 마십시오.
- (3) 경찰관들은 반드시 특정 물리력 도구에 맞는 응급 처리를 제공하거나 용이하게 해야 합니다.
 - (a) 올레오레진 캡시컴(OC) 스프레이: 경찰관은 법 집행 당국이 통제하는 현장에서 가장 이른 안전한 기회에 가능하면 깨끗한 물을 붓거나 흘려보내 상대방의 눈을 씻고 환기를 통해 신선한 공기를 유입하는 방법으로 OC의 효과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b) Electronic Control Weapon(ECW, 전자 제어 무기): 경찰관은 법 집행 당국이 통제하는 현장에서 가장 이른 안전한 기회에 ECW 탐침을 제거합니다. 단, 탐침이 머리, 흉부 또는 사타구니 등 민감한 부위에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i) 민감한 부위에 있는 탐침은 EMT, 전문응급구조사, 또는 그 외 의료 전문가가 제거해야 합니다.
 - (ii) ECW 탐침은 생물학적 유해물로 취급해야 합니다.

물리력의 유형

핵심 원칙: 상황에 따라 저항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최소의 물리력을 사용합니다. (Revised Code of Washington(RCW, 워싱턴 주 개정 법률) 10.120.020).

핵심 원칙: 심각한 신체적 부상의 즉각적인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 한해 치명적 물리력을 사용합니다. (Revised Code of Washington(RCW, 워싱턴 주 개정 법률) 10.120.020 [2022 c 80 §3 및 2022 c 4 §3]).

경찰관들은 더 큰 물리력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유형의 물리력을 소진할 필요가 없습니다.

- (1) **더 낮은 수준의 물리력:** 부상을 초래할 의도가 아니며 부상 초래 확률이 낮지만 일시적인 불편감이나 고통을 초래할 수 있는 유형의 물리력입니다. 상대방의 특성 및 상태를 포함해, 상황에 따라 더 낮은 수준의 물리력 옵션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a) 움직임을 지시하는 기법(예: 뒤로 밀기, 에스코트하기, 들어올리기, 나르기).
- (b) 제어 홀드(예: 손목 꺾기, 손가락 꺾기, 관절 조작).
- (c) 오픈 핸드 기법.
- (d) 테이크다운. 또는
- (e) 호블 리스트레이인트 사용.

- (2) **중간 수준의 물리력:** 상당한 부상 또는 위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 가능한 위험이 존재하지만 사망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거나 사망 초래를 의도하는 것도 아닌 유형의 물리력입니다.

전체적인 상황에 따라, 상대방이 경찰관이나 다른 사람들을 바로 폭행하겠다고 위협하는 경우 중간 수준의 물리력이 합당할 수 있습니다. 중간 수준의 물리력 옵션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a) 올레오레진 캡시컴(OC) 스프레이
- (b) ECW(전자 제어 무기)
- (c) PIW(발사체 충격 무기)
- (d) 개와 상대방 간의 물리적 접촉에 의한 개 물림 또는 부상
- (e) 충격 무기 타격(머리, 목, 목구멍 또는 척추에 대한 충격 제외)
- (f) 주먹치기, 발차기 또는 그 외 경찰관의 신체를 이용한 타격

- (i) 경찰관은 자기 방위 또는 다른 사람들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상대방의 머리를 향한 타격 기법만 사용해야 합니다. 주먹, 팔꿈치, 무릎 및 발을 사용해 사람의 머리를 타격하는 것은 고통 순응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3) **치명적 물리력:** 경찰관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을 심각한 신체적 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치명적 물리력이 필요한 경우에만 상대방에게 치명적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RCW 10.120.020). 경찰관은 자기 자신에게만 위험이 되고 다른 사람이나 경찰관에게는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부상에 대한 즉각적 위협을 가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치명적 물리력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치명적 물리력의 예:

- (i) 머리, 목, 목구멍 또는 척추에 대한 충격 무기 가격
- (ii) 상대방의 머리를 딱딱하고 고정된 물체에 부딪히는 것.
- (iii) 상대방을 향해 치명적 탄약이 장전된 총기를 발사하는 것. 또는
- (iv) 차량 밖에 있는 사람을 의도적으로 차량을 이용해 치는 것.

물리력 도구의 선택

핵심 원칙: 가능한 경우 항상 치명적 물리력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 가능하고 적절한, 덜 치명적인 대안을 사용합니다. (RCW 10.120.020).

- (1) 소속 기관은 반드시 경찰관들이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덜 치명적인 대안을 제공해야 합니다. (RCW 10.120.020 [2022 c 4 §3]).
- (2) 경찰관들은 모든 도구를 교육 및 해당 장비 제조사의 지시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올레오레진 캡시컴(OC) 스프레이

- (1) OC는 눈, 코, 입 및 피부에 심하게 따끔거리는 느낌을 초래하는 염증성 작용제로, 눈을 감게 만들고, 눈물이 나고 부어오르게 만들며, 질식, 구토를 초래하고 숨이 차게 만들 수 있습니다.
- (2) OC 스프레이를 처음 분사하고 난 후에는 매번 다시 분사하려면 그렇게 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3) OC 스프레이는 밀폐되어 있고 사람이 많아서 무관한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공간 내에서는 부적절합니다. 단, OC 스프레이가 유일하게 사용 가능하고 적절한 물리력 수단인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OC를 사용하는 경찰관은 무관한 사람들이 의도치 않게 노출되는 것을 피하거나 최소화하려고 시도해야 합니다.

충격 무기

- (1) 기관에서 지급하고 사용 허가하는 충격 무기에는 보통 경찰봉이 포함됩니다.
- (2) 경찰관은 치명적 물리력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머리, 목, 얼굴, 목구멍, 척추, 사타구니 또는 신장 등을 포함해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위는 의도적으로 타격해서는 안 됩니다.
- (3) 경찰관은 존재하는 위협이 충격 무기 경고가 정당화되지 못하는 경우 겁을 주기 위해 충격 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4) 경찰관은 안전하고 가능한 상황이 되는 즉시 충격 무기 타격의 효과를 재확인해야 하며,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다른 적절한 표적으로 이동하거나 다른 전술적 또는 물리력 옵션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Projectile Impact Weapons(장거리 충격 무기라고도 함)

- (1) Projectile Impact Weapon(PIW, 발사체 충격 무기)는 덜 치명적 탄환을 발사하며, 상대방의 몸을 관통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을 놀라게 하고, 일시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거나 일시적으로 불편감을 주도록 설계된 무기입니다.
- (2) 경찰관들은 법 집행 작전 수행 중에 실제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PIW 사용 방법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 (3) 안전하고 가능한 상황이 되었을 때 PIW를 발사하려는 경찰관은 발사 전 현장에 있는 다른 경찰관들에게 발사한다고 알려야 합니다.
- (4) 경찰관은 둔부, 허벅지, 종아리 및 대근육군을 겨냥해야 합니다.
- (5) PIW를 사용하는 경찰관은 매번 발사 후 효과 정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PIW 추가 발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관은 다른 표적 부위를 겨냥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 (6) 제한된 용도. 치명적 물리력 사용이 정당화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PIW는 다음 상황에서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a) 치명적 물리력 사용이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 의도적으로 PIW로 머리, 목, 흉부 또는 사타구니를 겨냥하는 것.
 - (b) PIW 제조사의 지침에 어긋나는 거리에서 사용하는 것.

- (c) 높은 표면(예: 창문 밖 틀, 높은 곳에 설치된 임시 발판, 벼랑 근처 등)에 위치해 있는 사람을 겨냥하는 것. 단, 낙하 관련 부상을 예방 또는 최소화하기 위해 합당한 노력이 이루어진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예: 안전망 배치).

Electronic Control Weapons(‘전도 에너지 무기’라고도 함)

- (1) Electronic Control Weapon(ECW, 전기 제어 무기)는 일시적으로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 의도로 제작된 휴대용 장치로, 전하 또는 전류를 전달하는 다트/전극을 발사합니다.
- (2) ECW의 지급 및 소지:
 - (a) 승인 받은 ECW는 사용 자격을 인증 받은 경찰관만 사용할 수 있으며, 매년 재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b) ECW를 지급 받은 경찰관들은 ECW를 덜 치명적인 옵션으로 소지하고 다녀야 합니다.
 - (c) 훈련에 부합되는 경우, ECW를 소지하고 있는 경찰관은 근무 시간 전에 ECW에 대해 기능 점검을 실시하고 배터리 잔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관들은 작동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 상관 또는 그 외 적절한 담당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3) 사용 표준:
 - (a) 경찰관들은 신체의 보조 측면에 ECW를 휴대해야 하며, 극단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항상 보조(총 발사 손 반대쪽)손을 사용해 ECW를 뽑고, 보이고, 사용해야 합니다.
 - (b) 경찰관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ECW와 총기를 동시에 잡아서서는 안 됩니다.
 - (c) 경찰관은 머리, 목, 흉부 또는 생식기를 제외한 부위를 겨냥해야 합니다.
 - (d) 경찰관은 처음 사용한 ECW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 확실한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여러 개의 ECW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e) 경찰관은 ECW의 일차적 사용 용도가 고통 순응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기절(드라이브-스턴) 모드는 상대방에게 탐침이 하나만 부착된 경우, 양쪽 탐침이 서로 가까이 부착된 경우, 또는 다른 사용 가능하고 적절한 덜 치명적인 옵션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해 무력화 회로를 연결하는 데 필요한 상황에 한해 사용해야 합니다.
 - (f) 경찰관은 ECW를 여러 차례 사용하는 경우 심각한 신체 부상 또는 사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 (g) ECW는 5초 이하의 표준 발사 주기 1회를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상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경찰관은 상대를 제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 횟수의 주기만 사용해야 합니다.
 - (h) 경찰관들은 한 사람에 대해 ECW를 3회 사용했는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공격하는 경우 ECW가 그 사람에 대해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단정하고 다른 옵션을 고려해야 합니다.
 - (i) 경찰관들은 각 ECW 사용에 대해 정당한 사유를 명확히 설명하고 기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4) 제한된 사용. ECW는 다음 상황에서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a) 다른 요인은 없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달아나고 있는 사람.
 - (b) 치명적 물리력 사용이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미 수갑을 채웠거나 다른 방식으로 제압이 되어 있는 사람.
 - (c) 높은 표면(예: 창문 밖 틀, 비계, 벼랑 근처 등)에 위치해 있는 사람을 겨냥하는 것. 단, 낙하 관련 부상을 예방 또는 최소화하기 위해 합당한 노력이 이루어진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예: 안전망 배치).
 - (d) 치명적 물리력 사용이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 자동차, 트럭, 모터사이클, 전지형차(ATV), 자전거 및 스쿠터를 포함해, 움직이고 있는 차량을 물리적으로 제어하고 있는 운전자.
 - (e) 경찰관이 휘발성 추진제, 가솔린, 천연 가스 또는 프로판 가스가 들어 있는 OC 스프레이를 비롯해 개방된 불꽃에 의해 점화될 수 있는 잠재적 가연성, 휘발성, 또는 폭발성 물질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거나 그렇게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환경 내에서.

총기

- (1) 총기는 치명적 탄약이 들어 있고 경찰관이 소지하는 무기로, 소속 기관의 총기 명세를 충족하거나 법 집행 기관의 지도부가 전문 총기로 허가한 무기를 말합니다.
- (2) 경찰관들은 치명적 물리력이 허가된 상황에 한해 사람을 향해 총기를 발사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총기는 매번 발사할 때마다 발사가 정당화되어야 합니다.
- (3) 총기 겨냥하기 및 뽑기:
 - (a) 경찰관은 치명적 물리력이 허가된 상황에 한해 사람을 향해 총기를 겨냥해야 합니다.
 - (b) 경찰관은 상황을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상황이 치명적 물리력이 허가되는 시점까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판단에 이른 경우 낮은 준비 자세(즉, 총집에서 꺼냈지만 경찰관의 시야 밖에 위치)로 총기를 뽑기만 해야 합니다.
 - (c) 치명적 물리력 사용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찰관은 안전하고 가능한 상황이 되는 즉시 총기를 내리고 총집에 넣거나 안전한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 (d) 사람을 향해 총기를 겨누는 것은 보고 대상 물리력 사용이며, 워싱턴 주 전체 물리력 사용 데이터 수집 프로그램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정당한 사유와 상황을 기록해야 합니다. (RCW 10.118.030).
- (4) 가능한 경우 경찰관은 총기를 발사할 것이라는 구두 경고를 해야 합니다.
- (5) 경찰관은 총기 사용 결정을 내리기 전에 사정 범위, 배경, 주변 사람들, 도비탄 가능성 및 그 외 생명 위험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 (6) 제한된 사용:
 - (a) 경찰관은 치명적 물리력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총기를 충격 무기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b) 움직이는 차량을 향해, 또는 차량에서 총기를 발사하는 것:
 - (i) 경찰관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치명적 무기 사용으로 인한 심각한 신체적 위해가 발생할 임박한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움직이는 차량을 향해 무기를 발사해서는 안 됩니다. 차량은 운전자가 해당 차량을 치명적 무기로 사용하고 있고, 경찰관 입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잠재적인 심각한 위해를 막을 다른 합당한 수단이 전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치명적 무기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RCW 10.116.060).
 - (ii) 가능한 경우 경찰관들은 운전자에게 무기를 발사하는 대신, 움직이는 차량의 이동 경로 밖으로 벗어나려고 시도해야 합니다.
 - (iii) 경찰관들은 차량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에서 차량의 일부에 충격을 가해서는 안 됩니다.
 - (iv) 경찰관들은 경찰관 또는 다른 사람을 치명적 물리력으로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움직이는 차량에서 총기를 발사해서는 안 됩니다.
- (7) 금지된 사용. 경찰관들은 다음 상황에서는 총기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a) 무고한 사람이 다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 (b) “경고 사격” 발사.
 - (c) 자기 자신에게만 위험이 되고 경찰관이나 다른 사람에게는 즉각적으로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명확한 능력, 기회 또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총기를 발사 또는 겨누는 것.
 - (d) 재산에만 위험하고 경찰관이나 다른 사람에게는 즉각적으로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명확한 기회 또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총기를 발사하거나 겨누는 것.

제압 기구의 선택

제압 기구는 사람의 움직임을 강제, 통제, 제한 또는 제압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구를 사용하는 것은 물리력에 해당되며, 본 정책에서 다루고 있는 물리력 사용에 적용되는 모든 고려 사항이 그 사용에 적용됩니다.

스핏 가드

- (1) 스피트 가드(“스핏 후드”, “스핏 마스크”, 또는 “스핏 삭”이라고도 부름)는 직물망 소재로 된 기구로, 타액, 점액 및 혈액을 통해 전염성 질병이 전염되는 것을 막거나 줄이려는 의도로 사람의 머리와 얼굴에 씌울 수 있습니다.
- (2) 사용 표준:
 - (a) 경찰관은 침을 뱉거나 무는 사람을 합법적으로 제압하거나 제압 시도할 때 스피트 가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b) 스피트 가드를 사용하는 경찰관은 적절한 통풍구가 확보되어 제압 대상자가 정상적으로 호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조사의 지시에 따라 스피트 가드를 올바른 방법으로 조여야 합니다.
 - (c) 소속 기관이 승인한 스피트 가드 적용에 관한 교육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경찰관에 대해서만 스피트 가드 사용이 허용됩니다.
 - (d) 경찰관은 소속 기관이 지급한 스피트 가드만 사용해야 합니다.
- (3) 제한된 사용:
 - (a) OC 스프레이 분사를 받은 사람은 스피트 가드 적용 전에 호흡이 힘들지 않도록 오염 물질 제거를 받아야 합니다.
 - (b) 정신 건강 위기에 처한 개인의 경우 스피트 가드 적용 시 고통 수준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경찰관들은 구두로 안심시키고 역동적으로 상황을 평가해 적절한 때에 즉시 스피트 가드를 제거해야 합니다.
- (4) 금지된 사용. 경찰관은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다음 상황이나 대상에는 스피트 가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a) 제압된 사람의 입이나 코 주변 부위에서 심한 출혈이 나타나는 경우.
 - (b) 지금 구토를 하고 있는 사람. 스피트 가드를 착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토를 하는 경우 즉시 스피트 가드를 제거하고 버려야 합니다.
 - (c) 호흡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 질환이 있다고 밝히거나 힘들거나 괴롭게 호흡하는 증상을 보이는 사람.
- (5) 의료 응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스피트 가드를 즉시 제거해야 합니다.
- (6) 경찰관은 스피트 가드 적용 전에 상대방에게 경고하고 상대방이 자신의 명령에 따를 수 있는 적절한 시간 여유를 주어야 합니다. 스피트 가드를 사용한 경우, 침 뱉거나 물기 위협이 멈추는 즉시, 또는 경찰관이 보기에 스피트 가드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스피트 가드를 제거해야 합니다.
- (7) 스피트 가드를 사용한 후, 그렇게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경찰관은 해당 개인을 착석 또는 측면 회복 자세로 옮기고 스피트 가드를 제거할 때까지 해당 개인을 계속 감시해야 합니다. 스피트 가드 착용 시 눈이 잘 보이지 않거나 시야가 왜곡될 수 있는 만큼 경찰관들은 해당 개인을 데리고 이동할 때 보조해 주어야 합니다.
- (8) 스피트 가드 사용 사실은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 (9) 스피트 가드는 매번 사용 후 폐기해야 합니다.

호블 리스트레인트

- (1) 호블 리스트레인트는 공격적인 사람을 제어하기 위해 그 사람의 양발을 제압할 수 있도록 설계된 끈 형태의 기구입니다.
- (2) 경찰관들은 기관에서 지급한 호블 리스트레인트만 사용해야 합니다.
- (3) 금지된 사용: 경찰관은 호블 리스트레인트를 수갑 또는 그 외 다른 유형의 제압 기구에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예: 사람을 “호그 타이”[손과 발을 모두 한데 묶는 것]하는 것).
- (4) 일단 호블 리스트레인트를 사용하면 경찰관은 그 사람을 얼굴이 바닥을 향하는 자세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 (5) 경찰관은 호블 리스트레인트를 착용한 사람을 계속 감시하면서 그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6) 경찰관은 그 사용 필요가 종료되면 호블 리스트레인트의 사용을 중지해야 합니다.

교육

- (1) 모든 경찰관과 상관들은 최소 연 1회 이 정책에 부합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 (a) 강의실 학습과 시나리오 기반 학습이 결합된 형태.
 - (b) 관련성 있고 가능한 경우 지역 사회 파트너와 함께 진행.
 - (c)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 사회를 이해하고, 치안 유지 활동과 형사 사법 제도의 인종 차별화된 경험이 경찰과의 상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해하기 위해 문화적 역량을 결합.
- (2) 이 정책은 호신술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